

초빙교수임용규정

제정 2003. 08. 29.

제9차 개정 2018. 07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초빙교수의 자격, 임용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6.1.4)

제2조(정의) 삭제 (2005.3.2.)

제3조(자격) 초빙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05.3.2., 2018.07.20)

1. 국내·외 대학 전임교원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사람
2. 해당 전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회적 저명인사
3. (신설 2017.07.10.), (삭제 2018.07.20)

제4조(임용절차) ① 초빙교수는 학과(부)장 및 단과대학장(대학원장)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16.02.15., 2017.05.25., 2017.07.10., 2018.01.16., 2018.07.20)

② 초빙교수를 추천한 때에는 추천자의 추천서, 이력서, 강의담당 과목명 또는 연구계획서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(신설 2017.05.25.)

③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사람은 재 추천할 수 없다. (신설 2017.05.25.)

제5조(임용기간) ①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(개정 2012.4.25., 2017.07.10., 2018.07.20)

②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재임용할 때에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5조의 2(겸임)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본직이 면직되었을 때에는 겸임도 당연 면직된다.(조 신설 2015.09.22)

제6조(임무 및 처우) ① 초빙교수는 학기당 3시간 이상 9시간 이하로 강의를 하여야 한다. (항 신설 2016.02.15.)(개정 2018.01.16)

② 초빙교수의 보수는 강의시간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며, 1년이상 재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6.02.15.)(항 번호 변경 2016.02.15.)

③ 초빙교수에게는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(항 번호 변

경 2016.02.15.)

(조 개정 2016.02.15)

제7조(면직) 초빙교수가 다음 각 호의 **하나에**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한다. (개정 2018.07.20)

1.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

2. 강의담당, 연구계획서의 미제출 또는 학문교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

3.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99, 2005.3.2)

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0, 2006.1.4)

이 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614, 2012.4.25)

이 규정은 2012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538, 2012.9.22)

이 규정은 2015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09, 2016.02.15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 임용된 교원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용잔여기간에 한하여 개정된 규정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30, 2017.05.29)

이 규정은 2017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98, 2017.07.10)

이 규정은 2017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8, 2018.01.16)

이 규정은 2018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79, 2018.07.20)

이 규정은 2018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